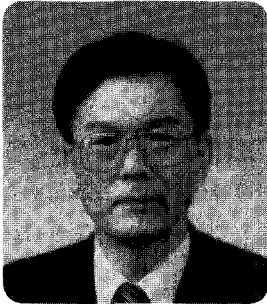


判例評釋(3)

- 등록무효의 효과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가능성과 등록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 달 로
변리사
〈동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난호에 이어 계속〉

2. “도형 + VALMONT” 거절사정사건

【항고심】 92 항원 1345 특허청항고심판소 1993. 11. 30 심결

사건의 표시 : 상표출원 제90-38681호 거절사정 불복사건

상표 및 지정상품 : “도형+VALMONT” 제12류 향수, 향유 등

〈주문〉 이건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

본원상표 “도형+VALMONT”는 상품구분 제12류 향수 등을 지정하여 1990. 12. 31 출원되고, 인용상표 “BELMONT” (등록제64391호)는 상품구분 제13류 샴푸, 린스를 지정하여 1979. 2. 27 출원되고 1979. 9. 4 등록된 후 1990. 7. 23 갱신 등록된 바 있다. 양 상표는 칭호가 유사한 것이므로 인용상표가 1992. 12. 22 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3항에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본원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상고심】 93 후 2028 대법원 1994. 5. 26 선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목 차

- I. 서설
- II.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의 판단시점
- III. 상표등록무효의 효과
- IV. 사례 검토
- V. 학설의 대립
- VI. 결어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 및 다음호〉

심판소로 환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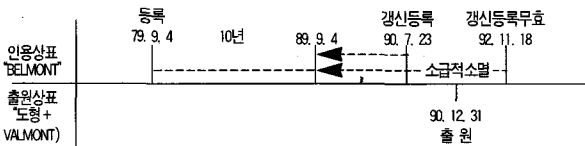
〈이유의 요지〉

인용상표가 갱신출원전 3년내 사용사실이 없다가 이유로 갱신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1992. 11. 18 확정됨으로써 인용상표의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이 종료되는 1989. 9. 4로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이 사건은 인용상표가 갱신등록무효로 된 것으로서 그 기본원리는 인용상표의 등록무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원상표의 출원당시 인용상표가 존재하였다면 추후 갱신등록이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된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항고심결은 정당하고, 이에 상반된 대법원 판결은 역시 오판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개요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3. “KOLON(코오롱)” 등록무효심판사건

【항고심】 91 항당 382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

8. 31 심결

사건의 표시 : 등록제 150134호 상표등록무효심판사건

상표 및 지정상품 : “KOLON(코오롱)” 제13류 화장비누, 세탁비누 등

〈주문〉 이건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항고심판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의 요지〉

이건 등록상표 “KOLON(코오롱)”은 제13류 화장비누, 샴푸, 세탁비누 등을 지정상품으로하여 1986. 8. 12 출원, 1988. 1. 8 등록되고 1990. 3. 29 “화장비누, 샴푸”를 말소 등록하였다. 이에 대하여 인용상표 “KOULONG(고우롱)”(등록제42808호)은 제12류 화장크리임, 향수, 로션 등을 지정하여 1974. 4. 9 출원 1975. 9. 6 등록되고, 1986. 4. 14 갱신등록된 후 1992. 4. 17 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항고심판청구인은 “화장비누등”을 1990. 3. 29 말소등록하여 상품이 비유사하고, 인용상표를 1991. 1. 7양수하였으므로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하고, 인용상표가 1992. 4. 17 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인용상표권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무효원인사실은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시에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등록후에 무효원인사실이 소멸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상표권의 이전등록이나 갱신등록무효심결확정이 있었다 하여도 이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여부의 판단 시기는 출원시는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1986. 8. 12 현재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주)코오롱이고 인용상표자는 김원철로

서 타인임이 분명하고 양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된 것이므로 등록무효를 면할 수 없다.

【상고심】 93 후 1339 대법원 1994. 5. 27 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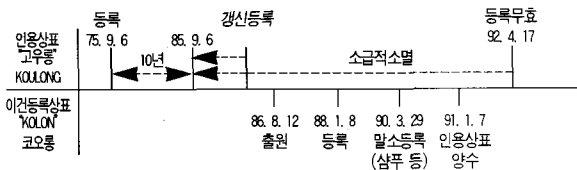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의 요지〉

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출원시에 인용상표가 갱신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인용상표는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 하였던 것이 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이 사건의 개요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에 인용상표가 갱신등록되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 명백하고, 항고심결의 판시와 같이 이건 등록상표의 등록후 인용상표와 저촉되는 지정상품의 말소등록이나 인용상표의 양수와 같이 등록후 무효원인사실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 인용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갱신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어 갱신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결국 인용상표의 상표권이 존속기간 만료일(1985. 9. 6)까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하여도 이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시를 기준으로 위 제7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등록무효라고 판단한 항고심결은 옳고, 이와 상반되는 대법원 판결은 갱신등록무효심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4. “매표” 등록무효심판사건

【항고심】 88 항당 96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 2. 28 심결

사건의 표시 : 상표등록제 125678호 등록무효심판사건

상표 및 지정상품 : “매표” 제38류 호미, 삼 등
〈주문〉 이건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항고심판비용은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의 요지〉

본건 상표등록제125678호 “매표”는 제38류 호미, 삼 등을 지정상품으로하여 1985. 4. 9 출원, 1986. 5. 14 등록되었으며, 인용상표(1) 등록제124745호 “매표+도형”의 인용상표 3건(이하 “인용상표들”이라 한다)은 다같이 제38류 삼, 호미, 낫 등을 지정상품

으로하여 1984. 12. 31 출원 1986. 3. 15 등록된 바 있다.

양상표는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라 하겠다.

항고심판청구인은 인용상표들은 모두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1988. 6. 2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가 모두 해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용상표들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출원, 등록된 본건에 있어서는 인용상표들에 대한 1988. 6. 2 심결확정결과는 본건 등록상표가 무효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하등의 영향될 바 못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다.

【상고심】 90 후 496 대법원 1990. 11. 27 선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의 요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위 제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사유는 당사자가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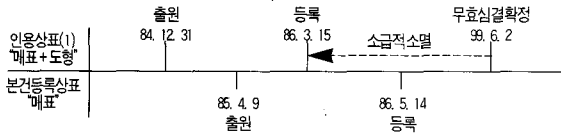
및 항고심판절차에서 무효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 데도 원심결의 직권으로 심리하여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제7조 제1항 제8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는 그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 선출원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 내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 등록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여부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므로 원심결의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상표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는 바,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뿐만 아니라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

【해설】

이 사건은 몇가지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먼저 사실관계의 개요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항고심은 그 심결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등록무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인용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아니라, 단지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원주의 위반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등록무효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고심결은 무효심결의 이유로 삼은 위 제7호의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본건 등록상표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정당하다.

당초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인용상표는 선출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본건상표는 선원주의에 위반된 것이기는 하나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판단시점은 최종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상표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상표출원이 포기·취하·무효 또는 거절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선원의 지위는 소급적으로 상실되므로, 선출원의 인용상표가 위 제7조 제5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등록을 저지하여 최종적으로 거절사정을 확정시킴으로써 유효하

게 등록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후원인 본건상표의 최종처분시를 기준으로 선원의 인용상표가 등록된 이상, 본건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본건 상표등록 후 인용상표가 무효심결확정되어도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상표법상 선원주의의 적용은 최종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선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후원은 심사보류되고, 선원의 지위가 확정(등록 또는 거절사정확정)되면 이에 따라 후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사정한다.

만약 후출원 심사계속중 이와 동일·유사한 타인의 선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등록무효되면, 후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있는가.

또 후출원상표의 등록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선출원등록상표의 무효심결확정시 까지 후출원상표의 심사는 보류되어야 하는가.

이를 긍정하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선원주의 적용의 판단시점이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취지에 비춰볼 때 당치 않다.

후출원상표의 최종처분시를 기준으로 타인의 선출원상표가 등록되면, 후출원상표는 선출원등록상표의 무효 등 소멸사유와 관계 없이 거절사정되며 달리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심사보류도 요하지 아니 한다.

그리고 선출원등록상표가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상표법 제7조 제4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무효심결확정후 1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출원이 가능하다는 현행 상표법의 취지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거꾸로 선출원 심사계속중 후출원상표가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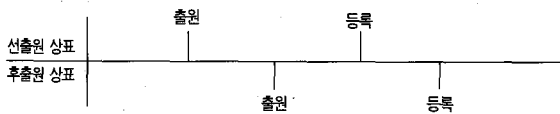
등록되면 선출원상표의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후출원 등록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선원주의 적용의 판단시점은 최종처분시이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선출원상표가 심사계속중이며, 후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제하에서 선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후출원의 배제효에서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때로는 등록상표의 등록요건구비여부(무효사유해당여부)에 관계 없이 등록상표가 지나치게 보호된다는 측면에서 등록주의의 폐단의 일면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요건 흠결의 선출원상표의 잘못된 등록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을 갖춘 후출원상표가 거절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또한 선출원 심사계속중 적법절차에 의한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착오로 출원공고된 경우에도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널리 이의신청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 제7조 제3항(위 제7호 및 제8호의 출원시 적용규정)의 장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나 별도의 입법조치는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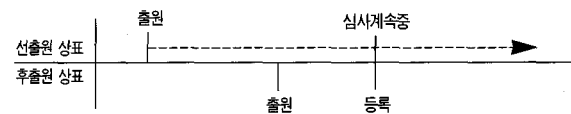
현행법상 선원주의 위반의 사례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원주의 위반 사례 1)



(선원주의 위반 사례 2)



(선원주의 위반 사례 3)

선원주의 위반 사례(1), (2)의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선원주의 위반 사례(3)의 경우, 후출원상표의 등록시(최종처분시)에 선출원상표는 여전히 선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추후 선출원상표의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후출원등록상표는 선원주의 위반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판결).

반대 판례(대법원 1990. 3. 27 선고 89후971판결 등)가 있으나 타당치 않다.

참고로, 일본 상표법의 경우 선원주의 위반은 거절사정이유에서 제외되어 있고, 선원상표가 등록된 때에는 후원상표는 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한국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거절사정하고, 후원이 착오로 먼저 등록된 경우에는 선원주의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요컨대, 일본 상표법상 선원주의 위반은 등록무효사유로만 존재하고 거절사유에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다시 본건으로 돌아가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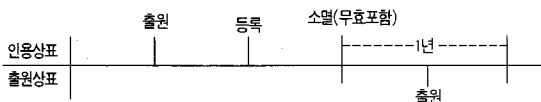
먼저, 상고심 판시내용중 잘못된 부분을 적시하면

첫째로,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는 항고심이 적용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같은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점이다.

관련 판시내용을 다시 인용하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 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선출원등록권리자에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내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 등록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제8호 규정의 취지에 대한 판시 부분은 옳지만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위 제8호의 위반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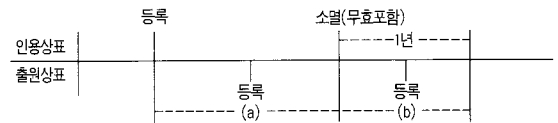
현행 상표법상 위 제8호의 적용시점에 관하여만 별도로 도시하면,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상표 소멸(무효 포함) 후 1년내 출원한 경우에만 위 제8호 위반으로 출원상표는 거절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후 5년의 제척기간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상표등록후 후출원상표가 등록되고, 그 후 선출원상표가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위 제8호는 적용될 수 없다. 위 제8호의 적용시점을 등록시로 규정한 일본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은 위 제8호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를 다시 도시하면,



(일본의 경우)

위 그림에서 일본 상표법에 의하면 (a), (b) 기간에는 각각 등록받을 수 없고, 일본과 같이 위 제7호 및 제8호의 적용을 등록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출원상표가 (b)기간내(소멸후 1년내)에 등록되면 위 제8호(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3호)의 위반으로 (a)기간내(인용상표등록후 소멸전) 등록되면 제7호(일본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의 위반으로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은 듯 위 제8호 적용의 기산점에 대하여 심결확정일을 기산점으로하여 일정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심결확정일로부터 1년」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단지 하나의 만료시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무효심결확정일 이전의 출원이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위 제8호의 규정이나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위 법리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또 이 판례의 태도는 출원일 이후에 그와 동일·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등록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또 다른 판례의 입장과 조화를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역시 대법원 판결의 오판을 간과하고 무비판적으로 이에 추종하는 잘못된 견해이다. 이런 경우에는 위 제7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무효심결의 소급효에만 집착한 나머지 위 제8호를 억지로 적용하려는 소위 첫단추를 잘못 꿰어 두 번째 단추도 잘못 꿰어 질 수 밖에 없는 연쇄적 오판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둘째로, 상고심은 항고심결이 위 제8호의 규정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적용하였다고 판시한 점이다.

현행 상표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 소위 직권심리주의원칙에 의하면,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위 판결의 판시 내용과 같이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요청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항고심결의 이유를 아무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항고심)이 위 제8호의 규정을 직권으로 심리하였거나 이를 무효심결의 이유로 삼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은 단지 무효심결 확정후라도 1년내 출원하

여 등록된 것은 위 제8호에 위반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무효심결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출원하여 등록된 본건 등록상표가 위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된 것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위 제8호 규정의 취지를 실시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한 잘못은 인정되어도(상표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 무효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심이 이 사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상표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9조 소정의 직권심리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로, 나아가 대법원 상고심은 사후심이긴 하나 이 사건은 원심이 적용한 위 제7호 위반이 아니라 상표법 제8조 제1항 선원주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원심 심결의 파기·환송보다는 그 결론이 정당하다는 점에서 상고를 기각했어야 옳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마땅히 등록무효되어야 하되 위 제8호의 위반이 아니며 원심이 이 규정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직권심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계속> **발특9801**

임대 안내

- 장 소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서관내
- 위 치 : 강남대로변 (제일생명빌딩 건너편)
- 전용율 : 73%

* 문의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557-1077 교205) 총무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